



### 유엔 인권이사회 소식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는 각국 정부를 대상으로 코비드-19가 의료서비스 이용, 긴급 조치, 주거, 장애인, 노인, 구금자 및 시설 거주자, 정보와 참여, 외국인 혐오와 인종주의, 이주민과 난민, 식량, 사생활, 아동, 젠더, 수자원 및 위생, 선주민, 소수민족, 국제 제재 등 여러 분야에서 인권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소개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주요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 의료서비스 이용

- 보건 전략은 전염병의 의학적 차원뿐 아니라 보건 대응의 일환으로 취해진 조치가 인권과 젠더에 미치는 결과까지 포함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 치료는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것은 그 어느 누구도 치료비 부족, 연령 또는 낙인을 이유로 적시에 그리고 적절한 치료를 거부당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긴급 조치

- 정부는 코비드-19 대응에 있어 어려운 결정을 해야만 한다. 국제법은 중대한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긴급 조치를 허락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 조치들은 검토된 위협에 비례해야 하고,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것은 특정 대상 및 기간이 있어야 하고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최소 침해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비상사태 선포 시 국가는 유엔 사무총장을 통해 공식적으로 통지를 제공해야 하는, 적용 가능한, 법적 의무를 충족해야 한다.

#### 주거

- 사람들이 집에 머무를 것을 요청하면서, 정부는 적절한 주거가 없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긴급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에 머물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코비드-19 조치는 일부 사람들— 예를 들어 과밀화 상황에 사는 사람들, 노숙인 그리고 식수나 위생에 대한 접근할 수 없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극히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
- 부적절한 주거에 사는 사람들과 노숙인에 대한 좋은 실천 사례는 바이러스에 영향을 받아 격리되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기본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주거(비어있고 방치된 집, 단기 임대 가능한)를 긴급히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 장애인

- 물리적 거리두기와 자가 격리와 같은 봉쇄조치는 음식을 먹거나 옷을 입고 목욕을 하는데 타인의 도움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장애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가정과 공동체 서비스에 의존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되어야 하고, 이 위기 기간에 국가는 장애인이 계속해서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이동의 제한이 현존하는 가족 및 사회적 지원 연계를 방해한다면, 그러한 제한은 다른 서비스로 대체되어야 한다.

출처: COVID-19 지침번역 (국제인권과 메모보고)

<http://unmik.unmissions.org/ohchr-guidance-covid-19-and-its-human-rights-dimensions-now-available-albanian-and-serbian>

## 해외국가인권기구 소식

### 사우디아라비아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제도 폐지

4월 26일 사우디아라비아 인권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가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한 사형제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성명서는 살만왕의 왕령을 인용하여 사형제 폐지 결정을 밝히고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는 대신 최대 10년 소년원에 수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보다 현대적인 형법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아우와드 아우와드 (Awwad Alawwad) 사우디아라비아 인권위원장이 말했다.

본 왕령에 따라 미성년자로서 아랍의 봄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최소 6명의 사형수가 사형집행을 면할 수 있게 되었다.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들의 사형집행을 중단하라고 호소한 바 있다.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 폐지는 태형 폐지에 이어 두 번째로 취해진 중요한 사법개혁 조치로서 앞으로도 인권 차원의 추가적인 개혁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모하메드 빈 살만 (Mohammed bin Salman) 왕세자는 극도로 보수적인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을 현대화하는 일련의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2019년 최소 187명을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995년 195명이 처형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올해 1월 이후 12명이 처형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형집행률을 보이는 국가 중 하나로 테러, 살인, 성폭행, 무장강도, 마약밀수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이는 사형선고를 받게 된다. 인권단체는 지속적으로 엄격한 이슬람법에 따라 통치되는 전체군주제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재판이 공정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왔다.

<http://www.bbc.com/news/world-middle-east-52436335>

<http://www.theguardian.com/world/2020/apr/27/saudi-arabia-ends-death-penalty-for-minors>

## 인권 NGO 소식

### 베트남: 페이스북은 정부 검열에 동조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4월 22일 베트남정부에 비판적인 게시글을 검열하겠다는 페이스북의 결정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4월 21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베트남 내부의 “반정부” 게시글의 검열을 크게 강화했다. 이는 베트남 국영 통신기업이 페이스북의 현지서버의 이용을 제한하여 페이스북을 일정기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베트남 당국이 압력을 가한 결과이다.

“페이스북이 베트남의 포괄적인 검열요구에 굴복한 것은 베트남과 다른 국가들의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매우 우려스러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국제앰네스티의 기업과 인권 자문 윌리엄 니 (William Nee)가 지적했다.

페이스북이 베트남 당국의 검열요구에 순응한 것은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정부는 페이스북을 국가검열에 연루시키는 명분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는 모든 IT기업이 위압적인 정부로부터 같은 형태의 압력이나 괴롭힘을 겪도록 하는 등 이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2020년 1월 베트남 당국은 동탐 (Dong Tam) 마을의 지속적인 부패의혹과 이로 인한 치안유지군과 주민들의 분쟁에 대한 공개 토론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에 대해 전례없는 단속을 실시했다.

이는 코비드-19사태가 발생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올해 1월부터 3월 중순 사이에 654명의 베트남인들이 페이스북에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글을 올린 후 경찰 소환조사를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게시글 삭제를 명령받았다.

올해 4월 15일 베트남 당국은 15/2020 칙령을 도입하여 불명확하고 자의적인 규제와 충돌한다고 간주되는 소셜미디어 게시글에 벌금을 부과하고 IT 기업들이 자의적 검열 및 감시 조치에 순응하도록 강제하도록 했다.

<http://www.amnesty.org/en/latest/news/2020/04/vietnam-facebook-cess-complicity-government-censorship>

## 인권 NGO 소식

### 국제인권연맹, 왕관장 변호사의 자유요구하는 성명 발표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 NGO인 국제인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은 코비드-19 사태를 구실로 왕관장(Wang Quanzhang) 변호사의 개인적 자유를 억압하려는 중국 당국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중국인권변호사인 왕관장은 적법한 사법절차 없이 1,200일 넘게 자의적 구금상태에 놓여있었고, 2019년 1월에는 '국가전복죄'로 4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0년 4월 5일에 형을 마치고 석방되었음에도 여전히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코비드-19를 구실로 왕변호사가 베이징의 가족들과 회합하는 것을 막고 14일간 '격리'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격리기간동안 왕 변호사가 외부와 소통하는 것을 불합리하고 불법적으로 제한했다. 전화 사용이 금지되었고 집앞을 지키는 요원이 배치되었다. 석방된 이후에도 왕 변호사는 명백하게 당국의 감시 하에 살고 있었고 계속해서 가택연금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 우려된다.

국제인권연맹은 중국 당국의 이와 같은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여 중국정부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1. 왕 변호사가 석방 이후 외부 세계와 소통할 권리, 베이징의 가족들과 회합할 권리를 포함한 개인적 자유를 보장한다.
2. 세계인권선언 제12조 및 제13조에서 보장하는 것처럼 왕 변호사와 그의 가족들의 사생활 보장 권리, 거주와 이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3. 왕 변호사와 가족들이 향후 괴롭힘, 감시, 박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국제인권연맹은 중국 당국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7조와 세계인권선언 제3조, 제12조, 제13조에 따라 왕 변호사의 개인적 자유를 보장하고 모든 형태의 가택연금, 감시, 개인적 자유에 대한 제약을 중단하고 왕 변호사가 베이징에 돌아가 가족들과 회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http://222.fidh.org/spip.php?page=imprimir\\_articulo&id\\_article=25421](http://222.fidh.org/spip.php?page=imprimir_articulo&id_article=25421)

### 국제 인권 동향

Human Rights Worldwide

국제 인권 동향은 위원회 직원들의 국제 인권 의식 고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월 1회 발행됩니다. 각 과에서도 관련 소식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제안 및 코멘트는 아래로 부탁드립니다.

정책교육국 국제인권과  
담당자 김효정 hjkim5@nhrc.go.kr